

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출자 : 오영탁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0년 10월 5일
-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6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 산업의 발전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관광상품의 정의(안 제2조)
- 관광상품 육성 및 개발을 위한 시책과 사업(안 제3조)
- 충청북도 관광상품개발육성위원회 설치, 구성 및 운영(안 제4조~제6조)
- 관광상품 발굴을 위한 관련 행사(안 제7조)
- 관련 행사 입상자에 대한 지원(안 제8조)
- 관광상품의 선정, 절차, 효력, 해제(안 제9조~제14조)
- 관광상품 육성 및 마케팅을 위한 행정·재정적 지원(안 제15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에서는 관광상품에 대한 정의를,
 - 안 제3조에서는 관광상품 육성 및 개발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,
 -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문·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, 구성, 운영에 대한 사항을,
 -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관광상품 발굴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행사개최, 입상자 지원 사항을,
 -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관광상품에 대한 선정, 절차, 효력 사후 관리, 해제에 대한 사항을
 - 안 제15조에서는 관광상품 육성 및 마케팅을 위한 행정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우수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, 관광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. 끝.